국민권익위원회

관행적 부패, 갑질 등
행동강령 위반행위
집중신고기간

신고기간

2025. 5. 1. 목 ~ 7. 31. 목

‘간부 모시는 날’ 등 관행적 부패행위
민원인, 계약업체,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

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
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!

<간부 모시는 날이란?>

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

신고대상

1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, 2 민원인·계약업체·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,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

※ 욕설, 폭언, 인격모독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
신고방법

청렴포털 (www.clean.go.kr), **우편, 방문**

신고상담

1398번(부패신고 상담전화), **110번**(정부대표 민원전화)